
6. 곡성군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 근거) 곡성군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목적) 직원 및 지도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의결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① 직원 및 지도자의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 ② 직원 및 지도자위 승진·해임에 관한 사항
- ③ 직원 및 지도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④ 인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⑤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
- ⑥ 기타 인사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곡성군 체육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 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의 지역 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지방의회 의원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본회 선임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본회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① 위원회는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 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할 수 있

다.

②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을 신청케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2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① 개최일시
- ② 출석위원의 서명
- ③ 심의안건과 내용
- ④ 의사
- ⑤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